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50
----------	------

발의연월일 : 2017. 8. 29.

발의자 : 박홍근 · 신경민 · 김성수

변재일 · 고용진 · 정재호

전혜숙 · 백혜련 · 박광온

홍익표 · 유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를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발전전략, 주요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기능과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수행함(안 제2조).

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총 30명 이내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설치하고,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심의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및 실무자문, 심의위원회 위임안건의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 안건 중 특별한 사항의 사전검토 및 실무자문,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에 지방과학 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설치함(안 제7조).

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과학기술기본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심의기능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하며,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을 지명하여 전체회의에 관한 자신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관하여 부의장에게 자신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1

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체회의,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자문회의의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전체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의 자문위원회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조제1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자문회의의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조제2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자문회의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각 회의를 구성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 전체회의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자문회의 전체회의 및 각 위원회의 소집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자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회에 속한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의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위원회 등) ① 자문회의의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회의의 심의위원회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

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

는 사항

④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

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사전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

한 사항

3.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특별위

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① 자문회의의 전체회의,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정책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된다.

② 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